

[서식 예]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- 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-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 대표자 이사장 △△△

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〇〇. 〇. 〇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피고는 소외 망 김□□가 19○○. ○. ○. 순경으로 임용되어 그 때부터 ☆☆경 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○○. ○. ★★경찰서로 전입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○○파출소 외근원으로 근무하던 중, 20○○. ○. ○. ○○:○○경 출근하여 같은 파출소장으로부터 다음날 ○○:○○경까지의 주야간 근무명령을 받고 같은 날 ○○:○○부터 ○○:○○까지 무기고 등이 있는 위 파출소 관내 도보순찰근무



를 명받았으나 같은 날 ○○:○○까지만 도보순찰근무를 하고 파출소로 돌아온 사실, 위 망인은 그 당시 순경 5호봉으로 무기고 등을 경비하는 위 파출소 내 최상급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 시간에 파출소로 돌아와서 같은 파출소 근 무 순경인 소외 이□□. 예비군 무기고 근무 방위병들인 소외 박□□. 최□□. 정□□ 등과 같이 그 곳 방위병타격대실에서 음주하였고, 술이 부족하자 위 맥 주 외에도 파출소 내에 있던 맥주 6병을 추가로 나누어 마신 사실, 그런데 위 망인이 같은 날 ○○:○○경 그 곳 방위병타격대실 침상에 침구를 깔고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위 이□□이 속칭 "러시안 롤렛"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3.8구경 권총을 꺼내어 탄알집에 1발을 장전하고 탄알집을 돌리는 장난을 하다가 장전되어 있던 탄알이 발사되면서 약 0.88m 전방에 있 던 위 망인의 왼쪽 쇄골직하부위에 맞자 위 망인을 즉시 ○○시 ○길 소재 ○ ○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○○:○○경 급성출혈로 사망한 사실, 위 이 □□은 평소에도 "러시안 롤렛" 게임의 흉내를 내는 등 권총으로 자주 장난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는 사고당시 ○○:○○까지 무기고 등이 있는 관내의 도보순찰근무를 명받고도 ○○:○○경 파출소로 돌아와서 권총을 휴대한 채 무기고 등을 경비하는 중요하고도 위험한 업무를 부여받은 소내 최상급자로서 근무자들의 음주를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음주를 주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. 이러한 잘못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과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족보 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을 하였습니다.

2. 그러나 위 피고의 처분과 관련 살펴보면,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,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 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·부상·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, 사망하거나 또는 그질병·부상·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,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·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, 한편 공무원연금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, 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"중대한 과실"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도(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13632 판결 참



조) 피고의 위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위 망인이 이□□ 등과의 술자리를 마친 다음 잠을 자기 위하여 침상에서 침구를 깔고 있는 사이에 위 이□□이 갑자기 직무상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탄알 1발을 장전한 다음 탄알집을 돌리는 장난을 하다가 오발된 것이 위 망인에게 명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,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설시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.

3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망인이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, 이와 같은 위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	수사기록대장
1. 갑 제2호증	기본증명서
1. 갑 제3호증	주민등록등본
1. 갑 제4호증	사망진단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	각 1통
1. 소장부본	1통
1. 납 부 서	1통

2000. O. O. O. 어. 위 원고 O O O(인)

○ ○ 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용 · 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 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	
불복방법 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및 기 간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①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